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인재 육성』  
**가정통신문**

발송일: 2022.03.31.  
발송처: 임피중학교  
문의전화: 453-9642

**제 목**

**제목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사교육비 경감 및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교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교육 정상화법' 제정 배경**

- 가.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피해 방지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에 방해
- 나.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2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 목적**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선행의 판단 기준**

통상적으로 교수·학습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4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함.

**5 본교 방침**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본교는 교과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으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2022. 03. 31.

**임피중학교장(직인생략)**

## 「선행학습 폐해」 연수 자료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학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